

광주지방법원 2021. 10. 26 선고 2021가단273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0. 12.

판 결 선 고 2021. 10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영광군 C 창고용지 598㎡ 중 별지 도면 표시 4, 5, 6, 7, 8, 4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‘ㄷ’ 부분 68㎡ 지상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, 위 ‘ㄷ’ 부분 68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257조)

판사 박옥희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2019. 11. 1. 전남 영광군 C 창고용지 598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.
2.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, 5, 6, 7, 8, 4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'ㄷ' 부분 68㎡ 지상에 창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.
3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 중 위 'ㄷ' 부분 68㎡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도면



